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, 이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 및 후세대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, 이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,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이북5도민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¹⁾ 및 이북5도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

1) 이북5도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행정구역상의 도(道)로서 황해도, 평안남도, 평안북도, 함경남도 및 함경북도 등 이북5도와 경기도, 강원도의 미수복 市와 郡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

-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그 후세대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 보호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북5도민들과 그 후세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시책 마련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